보 수 규 정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1조 목적	····· 1
제2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1
제3조 정의	····· 1
제2장 연봉	····· 3
제4조 임원의 연봉	····· 3
제5조 기준급 및 직무급	····· 3
제6조 업무성과급	····· 3
제7조 명절상여금	3
제8조 수당	····· 3
제9조 연봉의 지급	····· 4
제3장 연봉의 조정	····· 4
제10조 기준급 및 호봉의 획정	····· 4
제11조 경력년수의 산정	····· 4
제12조 승진시 기준급 및 호봉의 획정	····· 5
제13조 강등시의 기준급 및 호봉의 획정	····· 5
제14조 기준급ㆍ호봉의 재조정 및 승급 등	····· 5
제15조 연봉통보 및 이의신청	6
제4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	·····6
제16조 지급일	6
제17조 연봉의 지급기준	6
제18조 연봉의 계산	····· 7
제19조 연봉의 조정	7

	제20조 휴직자의 보수7	
	제21조 직위해제자 등의 보수7	
	제21조의2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8	
	제21조의3 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시 보수지급8	
	제22조 겸직시의 보수8	
저	5장 퇴직금8	
	제23조 퇴직금 지급8	
	제24조 지급액9	
	제25조 임원 퇴직금의 지급제한9	
	제26조 사망자의 퇴직금 수령9	
	제27조 명예퇴직금10	
	제28조 희망퇴직금10	
	제29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10	
	제30조 퇴직금 최저지급액10	
저	6장 보칙10	
	제31조 다른 규정 등의 제정10	
부	보 최	

보수규정

2016. 5. 9 (규정제1096호)
2017. 1.25 (규정제1127호)
2017. 8.31 (규정제1141호)
2017. 9.20 (규정제1143호)
2017.11.29. (규정제1154호
2017.12.28. (규정제1162호)
2018. 1.25 (규정제1172호)
2018. 5.31. (규정제1183호)
2018. 6.28. (규정제1188호)
2018.12.20.(규정제1204호)
2019.01.24.(규정제1209호)

2019.12.19.(규정제1260호) 2020.01.28.(규정제1267호) 2020.08.27.(규정제1292호) 2020.12.24.(규정제1313호) 2021.09.29.(규정제1347호) 2021.12.29.(규정제1360호) 2022.11.30.(규정제1392호) 2022.12.21.(규정제1399호) 2023.02.23.(규정제1409호) 2023.12.20.(규정제1452호) 2024.05.29.(규정제1469호) 2024.12.18.(규정제1486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9., 2021.09.29.>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9.29.>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 2017.9.20., 2021.09.29.>
 - 1. "보수"라 함은 직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준급, 직무급, 업무성과급, 경영성과급, 명절상여금을 말한다. <개정 2021.09.29.>
 - 2. "보수 등"이라 함은 보수 및 기타 수당과 복리후생비, 실비보상 경비, 기타 그 노력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 3. "기준급"이라 함은 해당연도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09.29.>
 - 4.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수준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직무급 표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차등지급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5. "업무성과급"이라 함은 2급이상 직원 대상으로 기준급 일부재원을 분할 한 것으로 업무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개정 2021.09.29.>
 - 6. "경영성과급"이라 함은 매년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내부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말하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7. "제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가산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말한다.
- 8. "명절상여금"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 9.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준급·직무급·성 과연봉 및 기타연봉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1.09.29.>
- 10.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급과 직무급의 연액을 말하며, 2급 이상 직원은 업무성과급 연액의 65%를 포함한다. <개정 2021.09.29.>
- 11. "성과연봉"이라 함은 업무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의 연액을 말한다.
- 12. "기타연봉"이라 함은 제수당과 명절상여금의 연액을 말한다.
- 13. "기본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 14.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을 지급대상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1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월액, 내부평가급 35%의 1/12를 말한다. <개정 2020.01.28., 2021.09.29.>
- 16. "평균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 중 가목과 나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급·직무급 월액, 기타연봉(연차수당, 명절상여금 제외)의 합산액을 3등분한 금액 <개정 2021.09.29.>
- 나. 기준일 직전 1년간 지급된 성과연봉과 명절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합산액에 12등분한 금액. 다만, 경영성과급은 기준일 직전 2년 이내에 지급한 금액 중 가장 최근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01.28., 2024.12.18.>
- 다. 가목과 나목의 합산한 금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라. 임·직원의 보수인상분 지급이 유보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 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휴직, 정직, 감봉, 직위해제, 보직대기 또는 「인사규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처분된 날 직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1.09.29. 2021.12.29., 2024.12.18.>
- 17.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18. "월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29.>
- 19. "승급"이라 함은 3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0.>

제2장 연봉

- 제4조(임원의 연봉) 임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제5조(기준급 및 직무급) ① 기준급 및 직무급은 별표 1의 기준급 및 직무급표와 같다.
 - ② 2급 이상 직원의 기준급 인상은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7.9.20. 2021.09.29.>
 - ③ 단시간근로자의 기준급 및 직무급은 통상근로자가 지급받을 기준급 및 직무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09.29.>
 - ④ 별정직 직원의 기준급 및 직무급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9.29.>
 - ⑤ 식대는 기준급에 포함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12.28. 2021.09.29. 2023.12.20>
 - ⑥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9.29.>
- **제6조(업무성과급)** ① 업무성과급은 별표 3의 업무성과급 산정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 정 2021.09.29.>
 - ②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성과급은 통상근로자가 지급받을 업무성과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09.29.>
 - ③ <삭제 2017.9.20.>
- **제7조(명절상여금)** ① 명절상여금은 별표 5의 명절상여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09.29.>
 - ② 명절상여금은 연액의 2분의 1씩을 명절(설, 추석) 전후 10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1.09.29.>
 - ③ 단시간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은 통상 근로자가 지급 받을 명절상여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09.29.>
 - ④ 별정직 직원의 명절상여금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9.29.>
- **제8조(수당)** 제3조제7호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제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 1. <삭제 2021.09.29.>
 - 2. <삭제 2021.09.29.>
 - 3. <삭제 2021.09.29.>

- 4. <삭제 2021.09.29.>
- 제9조(연봉의 지급) ① 기본연봉은 기준급·직무급월액으로 매월 지급하며 100원미만 단수 절사액은 12월 기준급·직무급월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9.29.>
 - ② 성과연봉은 업무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성과연봉 중 업무성과급은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되 평가결과 확정 후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8.27.개정 2021.09.29.>

제3장 연봉의 조정

- 제10조(기준급 및 호봉의 획정) ① 2급이상 신규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별표 1의 기준급 및 직무급표의 해당 채용 직급의 하한액으로 정하며, 제11조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는 산정 경력년수에 별표 7 경력이 있는 신규 채용자의 경력 인정의 직급별 가산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한다. 다만, 별표 7의 경력이 있는 신규 채용자의 경력 인정의한계경력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계경력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0. 2021.09.29.> ② 3급이하 신규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 초임 호봉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산정하여 경력년수에 기본호봉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하고 산정한호봉이 별표 7의 경력이 있는 신규채용자의 경력 인정의 직급별 최고호봉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급별 최고호봉을 적용한다. <신설 2017.9.20. 2021.09.29.>
 - ③ 3급이하 신규임용자가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신설 2017.9.20. 2021.09.29.>
- **제11조(경력년수의 산정)** ① 직원의 경력년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1.09.29.>
 - 1. 임용전 경력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경력은 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하되 계산단위는 년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경력년수 산정시 2급 이상의 직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반영하며, 3급 이하의 직원은 반영되지 아니한 년 미만의월수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최초 경력년수 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승급에 반영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개정 2017.9.20. 2021.09.29.>
 - 가. 갑경력: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개 정 2021.09.29.>
 - 나. 을경력: 상장기업체 및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기관 정규직 경력, 갑경력 중 비정규직 경력(상근직) <개정 2021.09.29.>
 - 다. 병경력: 기타 기업체 정규직 경력, 상장기업체 및「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의한 비정규직 경력(상근직) <개정 2021.09.29.>

-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경력기간에 각각 그 종류에 따라 다음 비율을 곱하여 경력년수를 환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10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9.29.>
- 가. 갑경력: 8할
- 나. 을경력: 6할
- 다. 병경력: 4할
-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직원으로서 재직하였던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단 근속기간의 10할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력년수 산정은 입사당시 제출된 경력에 의한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후에 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29.>
- 제12조(승진시 기준급 및 호봉의 획정) ① 3급이상 직원의 승진 시 기준급은 승진 전 기준급에 별표 8의 승진시 기준급 가산율표의 승진 시 가감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급 및 직무급표의 기준급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하한액으로 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0. 2021.09.29.>
 - ② 삭제<2018.6.28.>
 - ③ 삭제<2018.6.28.>
 - ④ 삭제<2018.6.28.>
 - ⑤ 4급이하 직원의 승진 시 호봉은 별표9의 승진호봉 조견표를 따른다. <신설 2018.6.28. 2021.09.29.>
- 제13조(강등시의 기준급 및 호봉의 획정) ① 1급 직원의 강등 시에는 강등 처분 이전 직급의 최종 기준급에 강등 처분 전 직급으로의 승진일로부터 강등일까지의 기간에 별표 7의 경력이 있는 신규 채용자의 경력 인정의 가산급을 승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급을 재산정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반영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기준급이 별표 1의 기준급 및 직무급표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0. 2021.09.29.>
 - ② 2급이하 직원의 강등시에는 강등 처분전 직급 이전 직급의 최종 호봉에 강등처분 전 직급으로의 승진일부터 강등일까지 제14조의 기준에 따른 승급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한계호봉을 한도로 하고, 년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7.9.20. 2021.09.29.>
- 제14조(기준급·호봉의 재조정 및 승급 등) ①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준급 및 호봉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0. 2021.09.29.>
 - 1. 전력조회 결과 경력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

- 2. 입사 후 3월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 3. 기타 경력 또는 기준급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3급이하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
- 느 하나에 따른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29.>
- 1. 징계처분기간
- 2. 「인사규정」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개정 2022.12.21.>
- 3. 「인사규정」제59조의2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 4. 「인사규정」제58조에 따른 휴직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21.09.29.>
- 가. 「인사규정」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
- 나. 「인사규정」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 5. 「인사규정」제60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개정 2021.09.29.>
- ③ 승급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신설 2017.9.20. 2021.09.29.>
- ④ 직급별 한계호봉은 3급부터 5급까지는 25호봉, 6급은 20호봉, 7급은 15호봉으로 한다. <신설 2017.9.20. 2021.09.29. 2024.05.29>
- ⑤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사람이 법원의 판결 및 수사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신설 2023.02.23.>
- 제15조(연봉통보 및 이의신청) ① 2급이상 직원의 연봉은 매년 조정 후 전자적 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연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봉이의신청은 본인의 연봉산정에 한하며 타인과의 연봉 비교를 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1.09.29.>
 - ② 연봉 통보를 받고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29.>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사규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개정 2021.09.29.>

제4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

제16조(지급일) 연봉의 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 제17조(연봉의 지급기준) ① 연봉 월액의 지급은 월단위로 한다. 다만, 결근은 무급으로 하며 무급휴가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21.09.29.>
 - ②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급은 해당 월일수분(무급휴무일 제외)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제 적용자의 시간급은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분의 1로 한다. <개정 2021.09.29.>
- **제18조(연봉의 계산)** ① 연봉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09.29.>
 - ② 신규채용, 승진, 복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보직대기자등의 연봉은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9.29.>
 - ③ 퇴직자의 연봉은 퇴직직전일(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당월 기준급·직무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7.12.28. 2021.09.29.>
 - 1. 해당 월 14일까지만 근무한 자 <개정 2017.12.28.>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설날,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 (산전휴가자 포함)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제 58조(휴직), 제60조(직위해제), 제64조제1항제3호(정직)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09.29. 2023.02.23. 2023.12.20>
- **제19조(연봉의 조정)** ① 연봉은 연 1회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 ② 연봉의 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으로 지급하고 확정 후 기준일로부터 소급 지급한다. <개정 2021.09.29.>
- 제20조(휴직자의 보수) ①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9.29.>
 - ② 업무상 이외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는 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기본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며,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까지 기본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고, 국외 유학을 사유로 휴직한 자에 대한 보수는 최대 2년 동안 기본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20.8.27., 2021.09.29.>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① 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월액의 80%만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6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자의 경우 기본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보수는 기본연봉월액의 30%를 지급한다. <개정 2017.8.31., 2017.9.20., 2020.8.27. 2021.09.29.>

[전문개정 2018. 12. 20.]

- ② 삭제<2021.12.20.>
- ③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강등(정직기간 3개월간) 및 정직자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7. 2021.09.29. 2022.11.30>
- ④ 「인사규정」 제64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수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한다. <개정 2021.09.29, 2023.12.20>
- 제21조의2(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임원 보수의 감액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27.]
- 제21조의3(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시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제2 항 각 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복귀 일 이후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02.23.>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효·취소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02.23.>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 2.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 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 제22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퇴직금

- 제23조(퇴직금 지급)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금청구서에 의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9.29.>
 - 1. 의원면직

- 2. 정년퇴직
- 3.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직권면직
-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 5.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 6. 임원 등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29.>
- ③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 제24조(지급액) ① 직원의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속근무년 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1.09.29. 2022.11.30.>
 - ② 임원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2.11.30.>
 -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당 1개월 분의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 2. 제1호의 재임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3. 제1호의 월평균임금은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근속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퇴직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9.29. 2022.11.30>
 - 제25조(임원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1.30.>
 - 1. 직무와 관련하여(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11.30.>
 - ③ 제1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가지 제23조에 의한 퇴직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류한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때에는 지급이 정지되었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9.29. 2022.11.30>
- 제26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27조(명예퇴직금) ① 「인사규정」 제56조에 의한 명예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다음 제 1호의 기준급여에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지급률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명예퇴직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1.09.29.>
 - 1. 기준급여: 퇴직 전 기본연봉월액(직무급은 제외) <개정 2021.09.29.>
 - 가. <삭제 2021.09.29.>
 - 나. <삭제 2021.09.29.>

로이 가산한다. <개정 2021.09.29.>

- 2. 지급률
- 가.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 × 1/2
- 나. 정년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 :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 60월) × 1/4
- 3.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정년잔여기간 월수계산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29.>
- 제28조(희망퇴직금) 「인사규정」 제56조의2에 의한 희망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 전기본연봉월액(직무급 제외)의 6회분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1.09.29.>
- 제29조(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①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9.29.>
 ②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
- 제30조(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최 저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다른 규정 등의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부 칙 <규정 제1096호, 2016.05.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승급"을 삭제하고, 제56조제4항 및 제56조의2제2항의 "보수규정"을 "연봉제규정"으로 하며 제50조제6호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한다.

②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승급"을 삭제한다.

③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승급과"를 삭제하고 제11조제4항, 제27조 및 제31조 중 "보수규정"을 "연봉제 규정"으로 한다.

④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준급, 직무급 및 명절상여금은"을 "기준급, 직무급, 명절상여금 및 업무성과 급은"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으로 보수규정과 성과연봉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1127호, 2017.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1호, 2017.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3호, 2017.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승진·전환"을 "승진·승급·전환"으로 하고, 제56조제4항 및 제56조의2 제2항 중 "연봉제규정"을 "보수규정"으로 하며, 제50조제6호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을 삭제한다.

②인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파견 또는 포상"을 "파견 · 승급 또는 포상"으로 한다.

③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승진"을 "승급과 승진"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27조 및 제31조 중 "연봉제규정"을 "보수규정"으로 한다.

④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준급, 직무급, 명절상여금 및 업무성과급은"을 "기준급, 직무급 및 명절상여금"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2급이상 직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업무성과급을 전직 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1차년도 100분의 59, 2차년도 100분의 59를 기준급에 편입하여 지급한다."으로 신설한다.

부 칙 <규정 제1154호, 2017.11.29>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62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1]은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172호, 2018. 01.25>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83호, 2018.05.31>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88호, 2018.06.28>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04호, 2018.12.20.>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09호, 2019.01.24.>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60호, 2019.12.19.>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67호, 2020.01.28.>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92호, 2020.08.27.>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13호, 2020.12.24.>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47호, 2021.09.29.>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60호, 2021.12.29.>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2호, 2022.11,30.>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9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 부칙 제3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급 특례에 관한 사항) 2021년 12월 31일 기준 3급 25호봉 및 4급 25호봉 직원의 기준급은 각각 78,441,400원, 73,263,000원으로 한다. 다만, 2021년 7월 승급자는 월할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409호, 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에 따른 기준급 및 직무급표 중 직무급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3. 1. 9.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1~2급 직원은 2023. 1. 1.부 터 3~7급 직원은 2022. 1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452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급, 직무급에 관한 특례) 별표1은 이 개정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1급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정 부칙 제2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규정 제1469호, 2024.05.29.>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486호, 2024.12.18.>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수규정 [별표 1] (제5조관련) <개정 2017.1.25., 2017.12.28., 2018. 1. 25. 2018. 12. 20., 2019.1.24., 2019.12.19. 2020.01.28., 2020.12.24. 2021.12.29., 2022.11.30., 2022.12.21. 2023.02.23. 2023.12.20.2024.12.18.>

기준급 및 직무급표

□ 기준급

ㅇ 2급이상 직원

(단위: 원, 년기준)

직급	상한액	하한액
1급	83,552,500	57,139,600
2급	79,168,900	53,749,100

ㅇ 3급이하 직원

(단위: 원, 년기준)

호봉	3급	4급	5급	6급	7급
1	47,787,800	43,283,400	38,569,000	32,219,800	25,540,600
2	48,875,300	44,310,700	39,480,200	34,892,000	27,690,000
3	49,980,800	45,356,600	40,408,100	35,648,000	28,298,200
4	51,101,500	46,419,200	41,351,100	36,417,100	28,916,300
5	52,232,700	47,494,300	42,306,900	37,198,900	29,544,400
6	53,381,300	48,588,300	43,279,500	37,991,700	30,180,800
7	54,544,600	49,698,200	44,267,100	38,798,000	30,828,100
8	55,716,900	50,820,100	45,266,800	39,617,200	31,485,700
9	56,898,300	51,954,300	46,278,200	40,447,300	32,152,000
10	58,093,900	53,104,100	47,304,700	41,288,300	32,827,100
11	59,297,700	54,265,600	48,341,700	42,141,200	33,511,900
12	60,511,000	55,441,500	49,388,900	43,003,900	34,204,300
13	61,729,800	56,628,500	50,446,800	43,875,100	34,903,500
14	62,970,800	57,840,300	51,524,500	44,762,800	35,616,200
15	64,214,700	59,051,500	52,604,800	45,642,400	36,322,300
16	65,455,100	60,260,600	53,687,900	46,530,100	
17	66,698,700	61,472,800	54,765,300	47,417,900	
18	68,069,200	62,847,300	55,944,900	48,396,800	
19	69,445,400	64,227,400	57,124,700	49,383,900	
20	70,818,700	65,596,300	58,304,700	50,363,000	
21	72,189,100	66,968,100	59,481,400		
22	73,560,000	68,340,000	60,655,700		
23	74,900,000	69,687,100	61,840,800		
24	76,246,100	71,022,600	63,021,000		
25	77,583,200	72,367,000	64,200,300		

□ 직무급

ㅇ 보직자

(단위 : 원, 년 기준)

직무등급	가	나	다	라	마
1~2급	22,320,000	20,400,000	19,080,000	18,120,000	17,280,000
3급	17,640,000	17,040,000	16,680,000	16,320,000	16,080,000

^{*} 기본자급: 1급1,932만원, 2급1,692만원, 팀장: 1급1,836만원, 2급1,776만원, 무보자자: 1급1,704만원, 2급1,584만원

ㅇ 비보직자

(단위 : 원, 년 기준)

직무등급	가	나	다	라	마
3급	15,720,000	15,540,000	15,360,000	15,180,000	15,000,000
4급	13,128,000	12,948,000	12,768,000	12,588,000	12,408,000
5급	10,812,000	10,692,000	10,572,000	10,452,000	10,332,000
6급	8,352,000	8,232,000	8,112,000	7,992,000	7,872,000
7급	7,656,000	7,536,000	7,416,000	7,296,000	7,176,000

^{*} 감사인·직제미반영팀장(2만원), 안전·보건·환경관리자(5만원), 정보보안전문관(7만원) 추가 지급

■ 보수규정 [별표 2] (제5조 관련) <개정 2022.11.30.>

기준급 인상률표

구분	종합근무평가 등급				
7 世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차등률	a+1.0%	a+0.5%	a%	a-0.5%	a-1.0%
인원비율	10%	15%	50%	15%	10%

※ a : 기본인상률

- ※ 종합근무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인상률을 누적식으로 차등한다.
- ※ 2급이상 직원은 인사관리세칙 제16조의2에 따른 평정대상기간 중 보직자(팀 장 포함)로 근무한 기간이 60일에 미달되는 경우에 평정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인상률을 적용한다.
- ※ 기준급 인상률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기준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보수규정 [별표 3] (제6조 관련) <개정 2017.1.25., 2018.1.25., 2019.1.24. 2022.11.30>

업무성과급 산정식표

직급	산 정 식
1급	(기준급-4,200,000원)×31.579%
2급	(기준급-3,000,000원)×31.579%

[별표4] <삭제 2020.8.27.>

■ 보수규정 [별표 5] (제12조 관련) <개정 2017.1.25., 2018.1.25., 2019.1.24.,2022.11.30.,2024.12.18.>

명절상여금 산정표

직급	산 정 식	차감급
1급	(기준급-4,200,000원)×1.754%	4,200,000원
2급	(기준급-3,000,000원)×1.754%	3,000,000원
3급~7급	(기준급-3,540,000원)×3.825%+60000	3,540,000원

■ 보수규정 [별표 6] (제8조 관련) <개정 2018.5.31. 2022.11.30>

제수당 지급 기준표

	종	류	지 급 기 준	비고
시 2	간 외	근 무 수 당	통상근로자 기준 통상임금 $ imes \frac{1.5}{209} imes$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명령 또는 승인을 받아 근무한 자에게 지급
야 가	간 산	근 무 수 당	통상근로자 기준 통상임금 × <u>0.5</u> × 근무시간	야간근무 명령 또는 승인을 받아 하오10시부터 익일 6시 까지 근무한 자에게 지급
호일	근무	1 일 소정근로시간 이 내	통상근로자 기준 통상임금 \times $\frac{1.5}{209}$ \times 근무시간	휴일근무 명령 또는 승인을
수	당	1 일 소정근로시간 초 과	통상근로자 기준 통상임금 $ imes \frac{2}{209} imes$ 근무시간	받아 근무한 자에게 지급
연	차	수 당	통상근로자 기준 통상임금 $\times \frac{1}{209} \times 8 \times $ 해당일수	취업규정 제14조에 의한 연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

■ 보수규정 [별표 7] (제10조,제13조 관련) <개정 2017.1.25., 2018.1.25., 2019.12.19., 2020.01.01. 2022.11.30.., 2023.12.20.,2024.12.18.>

경력이 있는 신규 채용자의 경력 인정

□ 2급이상 직원

(단위 : 원)

직급	가산급	한계경력년수
1급	1,099,200	14년
2급	1,059,100	12년

□ 3급이하 직원

직급	최고호봉
3급	12호
4급	10호
5급	9ই
6급	7호
7급	5호

■ 보수규정 [별표 8] (제12조 관련) <개정 2018.1.25., 2019.1.24., 2022.11.30>

승진시 기준급 가산율표

구 분	기준급 가감율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시	6.103%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시	-18.075%

■ 보수규정 [별표 9] (제12조 관련) <신설 2018.6.28. 2022.11.30., 2024.05.29>

승진호봉 조견표

	승진 전			승진 후	
직급	상반기	하반기	직급	상반기	하반기
4급	1호봉	1호봉	3급	2호봉	3호봉
4급	1호봉	2호봉	3급	2호봉	3호봉
4급	2호봉	2호봉	3급	3호봉	3호봉
4급	2호봉	3호봉	3급	3호봉	3호봉
4급	3호봉	3호봉	3급	3호봉	4호봉
4급	3호봉	4호봉	3급	3호봉	4호봉
4급	4호봉	4호봉	3급	4호봉	4호봉
4급	4호봉	5호봉	3급	4호봉	4호봉
4급	5호봉	5호봉	3급	4호봉	5호봉
4급	5호봉	6호봉	3급	4호봉	5호봉
4급	6호봉	6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6호봉	7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7호봉	7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7호봉	8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8호봉	8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8호봉	9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9호봉	9호봉	3급	5호봉	6호봉
4급	9호봉	10호봉	3급	6호봉	6호봉
4급	10호봉	10호봉	3급	7호봉	7호봉
4급	10호봉	11호봉	3급	7호봉	8호봉
4급	11호봉	11호봉	3급	8호봉	8호봉
4급	11호봉	12호봉	3급	8호봉	9호봉
4급	12호봉	12호봉	3급	9호봉	9호봉
4급	12호봉	13호봉	3급	9호봉	10호봉
4급	13호봉	13호봉	3급	10호봉	10호봉
4급	13호봉	14호봉	3급	10호봉	11호봉
4급	14호봉	14호봉	3급	11호봉	11호봉

	승진 전			승진 후	
직급	상반기	하반기	직급	상반기	하반기
4급	14호봉	15호봉	3급	11호봉	12호봉
4급	15호봉	15호봉	3급	12호봉	12호봉
4급	15호봉	16호봉	3급	13호봉	13호봉
 4급	16호봉	16호봉	3급	13호봉	14호봉
4급	16호봉	17호봉	3급	14호봉	14호봉
4급	17호봉	17호봉	3급	14호봉	15호봉
4급	17호봉	18호봉	3급	15호봉	15호봉
4급	18호봉	18호봉	3급	15호봉	16호봉
4급	18호봉	19호봉	3급	16호봉	16호봉
 4급	19호봉	19호봉	3급	16호봉	17호봉
4급	19호봉	20호봉	3급	17호봉	17호봉
4급	20호봉	20호봉	3급	17호봉	18호봉
4급	20호봉	21호봉	3급	18호봉	18호봉
4급	21호봉	21호봉	3급	18호봉	19호봉
4급	21호봉	22호봉	3급	19호봉	19호봉
4급	22호봉	22호봉	3급	19호봉	20호봉
4급	22호봉	23호봉	3급	20호봉	20호봉
4급	23호봉	23호봉	3급	20호봉	21호봉
4급	23호봉	24호봉	3급	21호봉	21호봉
4급	24호봉	24호봉	3급	21호봉	22호봉
4급	24호봉	25호봉	3급	22호봉	22호봉
4급	25호봉	25호봉	3급	22호봉	22호봉
5급	1호봉	1호봉	4급	2호봉	2호봉
5급	1호봉	2호봉	4급	2호봉	3호봉
5급	2호봉	2호봉	4급	2호봉	3호봉
5급	2호봉	3호봉	4급	3호봉	3호봉
5급	3호봉	3호봉	4급	3호봉	3호봉
5급	3호봉	4호봉	4급	3호봉	4호봉
5급	4호봉	4호봉	4급	3호봉	4호봉
5급	4호봉	5호봉	4급	4호봉	4호봉
5급	5호봉	5호봉	4급	4호봉	4호봉
5급	5호봉	6호봉	4급	4호봉	5호봉
5급	6호봉	6호봉	4급	4호봉	5호봉
5급	6호봉	7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7호봉	7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7호봉	8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8호봉	8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8호봉	9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9호봉	9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9호봉	10호봉	4급	5호봉	6호봉
5급	10호봉	10호봉	4급	6호봉	6호봉
5급	10호봉	11호봉	4급	6호봉	7호봉
5급	11호봉	11호봉	4급	7호봉	7호봉
5급	11호봉	12호봉	4급	7호봉	8호봉
5급	12호봉	12호봉	4급	8호봉	8호봉
5급	12호봉	13호봉	4급	8호봉	9호봉
5급	13호봉	13호봉	4급	9호봉	9호봉
5급	13호봉	14호봉	4급	9호봉	10호봉
5급	14호봉	14호봉	4급	10호봉	10호봉
5급	14호봉	15호봉	4급	10호봉	11호봉
5급	15호봉	15호봉	4급	11호봉	11호봉

	승진 전			승진 후	
직급	상반기	하반기	직급	상반기	하반기
5급	15호봉	16호봉	4급	11호봉	12호봉
5급	16호봉	16호봉	4급	12호봉	12호봉
5급	16호봉	17호봉	4급	12호봉	13호봉
5급	17호봉	17호봉	4급	13호봉	13호봉
5급	17호봉	18호봉	4급	13호봉	 14호봉
5급	18호봉	18호봉	4급	14호봉	14호봉
5급	18호봉	19호봉	4급	14호봉	15호봉
5급	19호봉	19호봉	4급	15호봉	15호봉
5급	19호봉	20호봉	4급	15호봉	16호봉
5급	20호봉	20호봉	4급	16호봉	16호봉
5급	20호봉	21호봉	4급	16호봉	17호봉
5급	21호봉	21호봉	4급	17호봉	17호봉
5급	21호봉	22호봉	4급	17호봉	18호봉
5급	22호봉	22호봉	4급	17호봉	18호봉
5급	22호봉	23호봉	4급	18호봉	18호봉
5급	23호봉	23호봉	4급	18호봉	19호봉
5급	23호봉	24호봉	4급	19호봉	19호봉
5급	24호봉	24호봉	4급	19호봉	20호봉
5급	24호봉	25호봉	4급	19호봉	20호봉
5급	25호봉	25호봉	4급	20호봉	20호봉
6급	1호봉	1호봉	5급	1호봉	1호봉
6급	1호봉	2호봉	5급	1호봉	1호봉
6급	2호봉	2호봉	5급	1호봉	2호봉
6급	2호봉	3호봉	5급	1호봉	2호봉
6급	3호봉	3호봉	5급	2호봉	2호봉
6급	3호봉	4호봉	5급	2호봉	2호봉
6급	4호봉	4호봉	5급	2호봉	3호봉
6급	4호봉	5호봉	5급	2호봉	3호봉
6급	5호봉	5호봉	5급	3호봉	3호봉
6급	5호봉	6호봉	5급	3호봉	3호봉
6급	6호봉	6호봉	5급	3호봉	4호봉
6급	6호봉	7호봉	5급	3호봉	4호봉
6급	7호봉	7호봉	5급	4호봉	4호봉
6급	7호봉	8호봉	5급	4호봉	4호봉
6급	8호봉	8호봉	5급	4호봉	5호봉
6급	8호봉	9호봉	5급	4호봉	5호봉
6급	9호봉	9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9호봉	10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10호봉	10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10호봉	11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11호봉	11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11호봉	12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12호봉	12호봉	5급	5호봉	6호봉
6급	12호봉	13호봉	5급	6호봉	6호봉
6급	13호봉	13호봉	5급	6호봉	7호봉
6급	13호봉	14호봉	5급	7호봉 	7호봉
6급	14호봉	14호봉	5급	7호봉	8호봉
6급	14호봉	15호봉	5급	8호봉	8호봉
6급	15호봉	15호봉	5급	8호봉	9호봉
6급	15호봉	16호봉	5급	9호봉	9호봉
6급	16호봉	16호봉	5급	9호봉	10호봉

	승진 전			승진 후	
직급	상반기	하반기	직급	상반기	하반기
6급	16호봉	17호봉	5급	10호봉	10호봉
6급	17호봉	17호봉	5급	10호봉	10호봉
6급	17호봉	18호봉	5급	10호봉	11호봉
6급	18호봉	18호봉	5급	11호봉	11호봉
6급	18호봉	19호봉	5급	11호봉	12호봉
6급	19호봉	19호봉	5급	12호봉	12호봉
6급	19호봉	20호봉	5급	12호봉	13호봉
6급	20호봉	20호봉	5급	13호봉	13호봉
7급	1호봉	1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1호봉	2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2호봉	2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2호봉	3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3호봉	3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3호봉	4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4호봉	4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4호봉	5호봉	6급	1호봉	1호봉
7급	5호봉	5호봉	6급	1호봉	2호봉
7급	5호봉	6호봉	6급	1호봉	2호봉
7급	6호봉	6호봉	6급	2호봉	2호봉
7급	6호봉	7호봉	6급	2호봉	2호봉
7급	7호봉	7호봉	6급	2호봉	3호봉
7급	7호봉	8호봉	6급	2호봉	3호봉
7급	8호봉	8호봉	6급	3호봉	3호봉
7급	8호봉	9호봉	6급	3호봉	3호봉
7급	9호봉	9호봉	6급	3호봉	4호봉
7급	9호봉	10호봉	6급	3호봉	4호봉
7급	10호봉	10호봉	6급	4호봉	4호봉
7급	10호봉	11호봉	6급	4호봉	4호봉
7급	11호봉	11호봉	6급	4호봉	5호봉
7급	11호봉	12호봉	6급	4호봉	5호봉
7급	12호봉	12호봉	6급	5호봉	6호봉
7급	12호봉	13호봉	6급	5호봉	6호봉
7급	13호봉	13호봉	6급	5호봉	6호봉
7급	13호봉	14호봉	6급	5호봉	6호봉
7급	14호봉	14호봉	6급	5호봉	6호봉
7급	14호봉	15호봉	6급	5호봉	6호봉
7급	15호봉	15호봉	6급	5호봉	6호봉

■ 보수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 관련) <개정 2017.11.29., 2021.09.29. 2022.11.30>

연봉 이의신청서				
성 명				
소 속				
직 급				
□ 이의 신청 /	ተ ቶ			
□ 요청사항				
< 연봉 이의신청· 이유로 할 수 9		반한 이의에 한정되며 타인과의 연봉비 교		
위외	· 같이 본인의 연봉에	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u> 월</u> 일		
	신청인	(서명/인)		
한국:	교통안전공단 ୧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보수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23조 관련) <개정 2017.11.29., 2021.09.29. 2022.11.30., 2023.12.20>

퇴 직 금 청 구 서					
퇴직 소속		직	급		
성 명		사	번		
퇴 직 연월일		퇴 직 ㅅ	h 유		
주 소					
개인IRP계좌번호			·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인)

년 월 일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하

*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일반계좌 가능